

무 배 당 치 매 보 장 보 험

보 통 보 험 약 관

부 배 당 치 매 보 장 보 협 보 통 보 협 약 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5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계약일로부터 매3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건강진단자금을 지급 [2종에 한함]
 2.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3.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후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180일이상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단확정받고, "수발필요상태"가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계속 되었을 때
 - (가) "수발필요상태"가 계속해서 180일이 되는 날에 치매급여금을 지급(1회에 한함)
(나)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매월 치매연금을 12회 확정 지급 (10년에 한함)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후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180일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단확정받고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계속해서 180일이 되는 날이 제2보험기간중에 속하였을 때
 - (가) "수발필요상태"가 계속해서 180일이 되는 날에 치매급여금을 지급(1회에 한함)
(나) "수발필요상태"가 계속해서 180일이 되는 날을 지나서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매월 치매연금을 12회 확정지급 (10년에 한함)
 5.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여금을 지급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또다시 사망보험금 및 사망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치매연금 확정지급분에 대해서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수발필요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험에서의 "수발필요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쇠진(衰盡)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상시(常時) 누워있는 상태로서 아래항목의 (가)에 해당되고, (나) 내지 (마) 항목중에서 3개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2. 기질성치매(器質性痴呆)로 진단확정되고, 의식장해(意識障害)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장해(判斷障害)가 있고, 또한 아래항목의 (가)내지 (마)항목중에서 2개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별표4 "용어해설" 참조)

- | |
|------------------------------|
| (가) 침상주변의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
| (나)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
| (다)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
| (라) 음식물의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
| (마)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

② "수발필요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 정한 국내의 병원의 의사자격을 가진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금리차보장금 포함)이 없습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8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 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20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9.5%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충남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수발필요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 되었음을 확인한 진단서
 4. 보험증권
 5. 피보험자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6. 주민등록증 계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7.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또는 제1항 제3호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회사는 건강진단자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⑥ 제2회 이후 지급되는 치매연금, 건강진단자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2조(보험금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폴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6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과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 1 종 】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 원
 피보험자연령
 55세 형 : 40세
 60세 형 : 43세
 65세 형 : 45세
 전기 납 (55세 납, 60세 납, 65세 납), 월 납

구 分			1년	3년	5년	7년	10년
남자	55세 형	납입보험료	3,228	9,684	16,140	22,596	32,280
		해 약 환 급 금	0	5,530	12,654	20,300	32,511
	60세 형	납입보험료	3,504	10,512	17,520	24,528	35,040
		해 약 환 급 금	0	6,230	13,783	21,873	34,839
여자	65세 형	납입보험료	3,540	10,620	17,700	24,780	35,400
		해 약 환 급 금	0	6,139	13,485	21,287	33,714
	55세 형	납입보험료	3,408	10,224	17,040	23,856	34,080
		해 약 환 급 금	0	6,526	14,669	23,597	38,369
	60세 형	납입보험료	3,756	11,268	18,780	26,292	37,560
		해 약 환 급 금	313	7,616	16,592	26,494	43,040
	65세 형	납입보험료	3,804	11,412	19,020	26,628	38,040
		해 약 환 급 금	355	7,728	16,758	26,703	43,332

【 2 종 】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 원
 퇴보험자연령 55세 형 : 40세
 60세 형 : 43세
 65세 형 : 45세
 전기 납 (55세 납, 60세 납, 65세 납), 월 납

구 分			1년	3년	5년	7년	10년
남자	55세 형	납입보험료	4,584	13,752	22,920	32,088	45,840
		해약환급금	1,053	9,963	14,814	20,252	31,450
	60세 형	납입보험료	4,944	14,832	24,720	34,608	49,440
		해약환급금	1,370	10,931	16,431	22,579	35,034
여자	65세 형	납입보험료	4,992	14,976	24,960	34,944	49,920
		해약환급금	1,385	10,909	16,259	22,190	34,241
	55세 형	납입보험료	4,764	14,292	23,820	33,348	47,640
		해약환급금	1,324	10,952	16,821	23,535	37,288
	60세 형	납입보험료	5,196	15,588	25,980	36,372	51,960
		해약환급금	1,753	12,321	19,249	27,206	43,234
	65세 형	납입보험료	5,256	15,768	26,280	36,792	52,560
		해약환급금	1,817	12,508	19,553	27,628	43,877

※ 위 해약환급금 예시에는 건강진단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시기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매3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 계외) [2종에 한함]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건강진단자금	매3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5%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	사망보험금	즉시	2년 미만 50%
			2년 이상 100%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후 그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전달 확정받고, "수발필요상태"가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 까지 계속되었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치매급여금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 되는 날	50% (1회에 한함)
	치매연금	제2보험기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매월 10% 12회 확정지급 (10년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후 그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전달 확정받고,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계속해서 180일이 되는 날이 제2보험기간 중에 속하였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	치매급여금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 되는 날	50% (1회에 한함)
	치매연금	"수발필요상태"에 해당된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계속해서 180일이 되는 날을 지나서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매월 10% 12회 확정지급 (10년에 한함)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	사망급여금	즉시	20%

(주)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55세 형 ~ 65세 형	계약일로부터 55세 (~6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55세 (~65세) 계약해당일 로부터 종신까지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 환 및 사망의 원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벤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 류 행 목	분 류 번 호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 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연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다음사항은 제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의수, 질식 및 아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장해 등급 분류 표

등급	신체장애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한 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제2급의 참고 사항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제 4 급	<p>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 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0.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1. "손가락의 장해"
-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첫째손가락은 말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결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결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3.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3,4,5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장 해 등급 분류 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발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ㅁ, ㅂ, ㅍ), 치설음 (ㄴ, ㄷ, ㄹ),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4)

용어 해설

1. 기질성 치매(器質性痴呆)

『기질성 치매로 진단 확정되다』는 것은 다음의 (가)와 (나)에 해당되는 「기질성 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서 진단 확정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뇌(腦)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나)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가)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 「기질성 치매」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알츠하이미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5.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의식장해(意識障礙)

『의식장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인지(認知)하고,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로 부터의 자극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의식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의식에 장해를 입은 상태를 「의식장해」라고 말합니다.

『의식장해』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의식혼탁(意識混濁)」과 「의식변용(意識變容)」으로 나누어 집니다.

『의식 혼탁』이란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며 그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라 경도(輕度)의 경우 경변[傾眠: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자극에 의해 각성(覺醒)하는 상태], 중도(中度)의 경우 혼면[昏眠:각성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강한 자극에는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상태], 고도(高度)의 경우 혼수[昏睡:정신활동은 정지되고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 『의식 변용』이란 특수한 『의식 장해』로서 이것은 Amentia(의식 혼탁은 경미하지만 응답은 종잡을 수 없어 스스로도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상태), 노망[비교적 고도(高度)의 의식 혼탁-의식의 정도가 동요되기 쉽다-과 함께 착각(錯覺), 환각(幻覺)을 수반하는 불안(不安), 불온(不穩), 흥분(興奮) 등을 나타내는 상태] 및 뚱뚱한 상태[의식 혼탁의 정도는 경미하지만 의식의 범위가 좁고, 외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 등이 있습니다.

3. 판단장해(判斷障害)

『판단장해』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시간의 판단장해 : 계절 또는 아침·점심·저녁의 어느 하나도 인식할 수 없음
- (나) 장소의 판단장해 : 현재 살고 있는 자기집 또는 현재 있는 장소를 인식할 수 없음
- (다) 인물의 판단장해 : 평상(平常)시 접하는 주위 사람을 인식할 수 없음